

동작구의회공고 제2019-22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6월 3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의장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안이유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작은 단위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제안·추진·결정 과정에서 공동체 치안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주민 불안 요인 등을 해소하고자 하며,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마을공동체 위원회 구성에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 참여(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의회의장 [주소 :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노량진동4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실(전화 : 820-1323, FAX 817-1474, E-mail : [chlgus64@dongjak.go.kr](mailto:chlgus64@dongjak.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작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5조제4항제2호 중 “대표,”를 “대표,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22조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9조(마을공동체 사업)</b>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1. ~ 10. (생략)</p> <p><b>제15조(구성) ① ~ ③</b> (생략)</p> <p>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p> <p>1. (생략)</p> <p>2. 주민 <u>대표</u>,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p> <p>⑤ (생략)</p> <p><b>제22조(수당)</b>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b>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③</b> (생략)</p> <p>④ 구청장은 예산의 <u>범위</u>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 (생략)</p>	<p><b>제9조(마을공동체 사업)</b> ----- ----- ----- ----- <u>범위</u> ----- -----.</p> <p>1. ~ 10. (현행과 같음)</p> <p><b>제15조(구성) ① ~ ③</b> (현행과 같음)</p> <p>④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대표, 동작경찰서 관련 부서장</u> ----- -----</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22조(수당)</b> ----- ----- ----- <u>범위</u> ----- -----.</p> <p><b>제25조(관리 및 운영) ① ~ ③</b> (현행과 같음)</p> <p>④ ----- <u>범위</u> ----- ----- -----.</p> <p>⑤ (현행과 같음)</p>